

대한장연구학회해외학술대회참가지원운영규정

2015. 9. 15 제정

제1조 (명칭)

“대한장연구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자의 선발과 지원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학회)

해외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중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학술대회로 한다.

제4조 (지원자의자격)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학회의 심포지움/특강의 좌장/연자/지정 토론자
2. 구연 혹은 포스터의 경우 연제당 발표자와 공동저자 1인

제5조 (지원신청)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서(학회양식참조)
2. 초록 (지원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발표자는 밑줄을 추가)
3. 초록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메일등)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초청장등)

제6조 (참가지원대상자선정)

제1항 (선정위원회구성)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회장이 간사 1인과 위원 3-5인을 임원 및 위원 중에서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의 기여도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초록 1편당 1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2. 구연 발표자, 심포지움/특강 연자 및 좌장은 우선 선정
3. 대한장연구학회 및 소화기연관학회전 현직임원 및 위원의 경우 가산
4. 최근 3년간 대한장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추계 연수강좌 참석 건수에 따라 가산
5. 최근 3년간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서 Intestinal Research게재 논문 수에 따라 가산
6. 학회 기여도가 높거나 본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가산
7. 최근 1년간 대한장연구학회 해외학술대회 지원 수혜시 감점
8. 선정 후 비참석자는 차기 지원 시 감점
9. 평가 점수 합산에서 동점인 경우 졸업 년도, 직급 순으로 상위자 우선
10. 전임의의 경우 소정의 인원을 별도 선정 가능
11.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 지원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제7조 (지원범위)

제 1항 상한액 내에서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나머지교통비, 식비 등은 상한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항 지역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설정하며, 구체적인 상한액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수혜자의무)

제1항 (품위유지)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시 대한장연구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항 (정산서류)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5일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1. 해외학술대회참가 결과보고서 (학회양식참조)
2. 항공탑승권 및 영수증, 학회등록비, 숙박비, 교통비 및 식사비 영수증 원본 등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

제3항 (수수료)

학회는 지원금에서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예산)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하되 임원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부칙)

제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항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 임원회의에서 통과 된 날부터 발효 한다.